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 - 113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나. 행정자치부 주관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회의('15.6.12)시 요청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 심의기간과 반복 심의 횟수 제한 기준을 미설정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토록 요청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안건 처리 기한과 반복 심의 횟수 설정 (안제6조의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안16조)

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에 의거 우리구 도시·건축공동계획위원회의 구성방안 마련 (안17조)

라.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의 임기를 준용 (안18조)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조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방안 마련 (안19조)

바. 기타 일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10. 08. ~ 2015.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11.13)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개최"를 "개의"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건 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안건 처리기간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상정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례」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2. 구청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

3.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건축 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8조(임기)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2항의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9조(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 4. (생 략)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4조(구성) ① ---------- 15명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한 차례만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의 ----------.

<신 설>	제6조의2(안건 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안건 처리기간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상정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2. 구청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 3.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17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 설>	제18조(임기)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2항의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신 설>	제19조(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